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18545
----------	-------

제안연월일 : 2026. 4. .

제안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1. 대안의 제안경위

#### 가. 심사경과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	심사 경과
2204176	김형동의원	2024. 9.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8차 전체회의(2024.11.21.)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li> <li>·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2024.12.3.) 상정 후 축조심사</li> <li>·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2025.2.19.) 상정</li> <li>·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2026.4. 2.) 상정 후 축조심사</li> </ul>
2211033		2025. 6.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전체회의(2025.11.14.)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li> <li>·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2026. 4. 2.) 상정 후 축조심사</li> </ul>
2207451	조지연의원	2025. 1.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2025. 7.18.)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li> <li>·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2026. 4. 2.) 상정 후 축조심사</li> </ul>

나.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2026. 4. 2.)에서 위 3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다.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 4. 7)에서 이러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조등금지물질에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금지물질이 포함되어 있는데, 제조등금지물질이면서 금지물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금지물질의 수입 허가 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조등금지물질 수입 승인을 각각 별도로 받아야 하여 규제가 중복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고용허가제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는 정부 주도로 입국 전후에 안전보건교육을 받는 반면, 취업비자로 취업하는 외국인은 사업주의 교육의무에 의존하고 있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작업장 배치 전 기초 안전보건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아닌 자가 기업의 불안심리 등을 악용하여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교육기관이라고 사칭하고, 법정교육을 빌미로 보험영업 등 영리활동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별도의 제재규정이 없는 상황임.

이에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금지물질 수입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별도 승인을 받지 않고

제조등금지물질을 수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일한 화학물질에 대한 중복규제를 해소하고,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때에 그 외국인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을 강화하며,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안전보건교육기관이라고 사칭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외국인근로자로 하여금 공단 또는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이하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2.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근로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사업주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근로자가 그 사업주에게 채용되기 전에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였거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원활한 실

시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외국어 통역서비스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시간·내용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는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임을 사칭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7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지물질의 수입 허가를 받은 자가 제조등금지물질을 수입하는 경우

제175조제5항제1호 중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제31조제1항, 제31조의2제1항,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33조제5항”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lt;신    설&gt;</p>	<p>제31조의2(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외국인근로자로 하여금 공단 또는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이하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p> <p>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p> <p>2.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근로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p> <p>② 사업주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근로자가 그 사업주에게 채용되기 전에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p>

하였거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외국어 통역서비스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시간·내용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안전보건교육기관) ① ~ ④ (생략)  
<신설>

제33조(안전보건교육기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는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임을 사칭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7조(유해·위험물질의 제조 등 금지)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험·연구 또는 검사 목적의 경우로

제117조(유해·위험물질의 제조 등 금지) ① (현행과 같음)  
② -----  
-----



